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라.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easugar@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여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에게 인천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여건조성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

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산·학·연 등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
3.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기반 조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4조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및 군·구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인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투자·상담회 개최
2. 의료 해외진출 사업에 관한 협력사업의 추진
3. 보건의료서비스 공유 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5. 국내외 홍보를 위한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가, 해외인사 초청 등 홍보마케팅
6. 의료전문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의 양성
7. 의료 해외시장 관리 및 상품 개발
8. 의료정보시스템 관리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9.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수용태세 서비스 지원
10.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홍보관 설치·운영, 해외 거점사무소 설치·운영 및 지원
11. 저개발국가에 대한 의료지원 등 나눔 의료
1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대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9조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관 설치·운영
 2.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전용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4.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탁에 관한 업무의 처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 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붙임 1】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비용이 발생하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 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없음

○ (관련 조문)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차년도(2017년)는 본예산 기준이며, 시비사업에 대해 2018년부터는 전년도 대비 매년 4% 증액하여 추계함.
- 국비는 공모신청에 의거 선정되며, 격년(2017, 2019, 2021년도)으로 2억 원을 확보 예상하여 시비사업에 추가로 추계하였음.(복지부: 의료기술 선도사업, 문체부: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675,400	952,400	782,500	1,013,800	846,400	1,080,300
국 비	600,000	200,000		200,000		200,000
시 비	4,075,400	752,400	782,500	813,800	846,400	880,300

다. 재원조달방안

-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원칙으로 함.
- 국비확보 시 매칭비율은 50%로 하되, 시비 사업비에서 부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소계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세출	사업비	952,400	782,500	1,013,800	846,400	1,080,300	4,675,400
	소계	952,400	782,500	1,013,800	846,400	1,080,300	4,675,400
재원 조달		952,400	782,500	1,013,800	846,400	1,080,300	4,675,400
국 비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시비	소 계	752,400	782,500	813,800	846,400	880,300	4,075,400
	일반회계	752,400	782,500	813,800	846,400	880,300	4,075,400
	특별회계						
	기 금						
군 · 구비							
민 간							
기 타							